

의안번호	제 380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**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심홍섭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6월 일

#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홍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6월 일

발 의 자 : 심홍섭·권광택·민경환·박영웅·  
박종갑·송은섭·이규완( 7인)

## 1. 제안 이유

- 국제화 촉진과 도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관련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국제민간기구를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함(안 제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예산조치 :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

7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3.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**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1.-2.(생략) 3. <u>외교통상부산하 국제민간단체</u> <u>로서의 법적지위 획득</u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-2.(현행과 같음) 3. <u>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</u> <u>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</u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

**제6조 (보조금의 지원)**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"등록 비영리민간단체"라 한다)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"공익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8조 (사업계획서 제출)**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소요경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사업보고서 제출)**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

**제2조 (정의)** 이 영에서 "사업비"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(이하 "법")

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·물적 경비를 말한다. 다만,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·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.